금형가열작업 중 유압작동유 분출로 인한 화재로 사망

재 해 개 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금형이 교체된 다이캐스팅기의 금형 일부분을 LPG 토오치로 가열 작업하던 중 유압작동유가 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현 장 사 진



<사진 1 : 재해발생 현장>



<사진 2 : 유압작동유가 분출된 호스의 파손부위>

재해발생 과정

- 1) 02:00경, 사망자는 다이캐스팅기 8호기에서 LPG 토오치로 금형의 일부분인 코어를 예열하고, 부상자는 사망자 뒷편에서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음
- 2) 02:17경, 사망자는 다이캐스팅기 8호기에서 LPG 토오치로 금형의 일부분인 코어를 예열하던 중, 갑자기 화염이 사망자 몸에 튀어 얼굴과 상체에 화상을 입어 사망하고 부상자는 화상을 입음. 8호기 옆의 7호기도 불이 붙어 화재가 계속 심해져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는 진압됨.

재해발생 원인

-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조치 미실시
 -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미비

동종재해 예방대책

-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조치 실시
 - LPG 토오치로 다이캐스팅기 금형을 예열할 때에는 토오치의 불꽃으로 유 압작동유 호스가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압작동유 호스를 불받이포 등으로 호스를 덮는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또한,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근에서 사용하는 유압작동유는 난연성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